

## 연구소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시행세칙은 산학협력단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4조에 의거 연구소 평가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가 시기)** 평가는 연구소운영보고서에 의하며, 매년 4월말까지로 한다.

**제3조(평가 기준 및 방법)** 평가기준 및 방법은 연구소별 특성을 고려, 영역별 평가 (별첨1) 를 시행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4조(평가 영역 및 등급)** ①평가영역은 크게 학술연구 개발분야와 특수목적 사업분야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영역 I	영역 II	영역 III
학술연구개발분야	연구개발	학술활동	조직운영

구 분	평가 영역(사업별)		
특수목적사업분야	장비구축 및 활용	지역혁신사업	창업보육

②학술연구개발분야 평가등급은 영역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4등급 단위의 평가를 한다. (단, Pass는 70점 이상, Non-Pass는 70점 미만)

평가등급	A	B	C	D
영역점수	3개영역 Pass	2개영역 Pass	1개영역 Pass	3개영역 Non-Pass

③특수목적사업분야 평가등급은 영역별 평가점수를 10점 단위이하하여 4등급 단위의 평가를 한다.

평가등급	A	B	C	D
영역점수	81 이상	80 ~ 71	70 ~ 61	60 미만

**제5조(평가결과 활용)** ①(연구소 운영비 지원) 연구소 운영비 지원은 연구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해 차등 지원한다. 다만,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공식적으로 지원받는 연구소 또는 독립운영이 가능한 연구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

②(연구소장 보직수당 지급) 연구소장의 보직수당은 평가결과 A등급 연구소의 소장에게 만 지급한다. 평가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, 그 기간 동안 B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본조 제1항에 의거 연구소 운영비를 지원받는 연구소는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③(연구소의 자격변경 및 통폐합) 연구소의 자격변경 및 통폐합은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다.

**제6조(평가결과 준용)** 사업비 지원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연구소(센터)인 경우 그 최근 결과를 연구소 평가

에 준용한다. 다만, 사업비 지원기관과 학교의 평가등급체계(점수제,등급제 등)가 상이한 경우는 환산하여 정한다.<신설 2010.8.1>

**부칙<2008.1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<2010.8.1>**

**제1조(시행일)** 시행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